■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[별 표] <신설 1995.12.22>

<u>전 비 품</u>

1. 전투장비

분 류	세 목
화 력	개인화기, 공용화기, 화포, 함포, 수중병기, 함정병기류와 이에 관
	련되는 장비 및 사격 통제기기
특수무기	방공유도무기, 대공화기, 대전차유도무기, 지대지무기류와 방공통
	제 장비류(지상 및 함상)
기 동	전차, 장갑차, 토우차, 수륙양용장갑차, 사격통제차량
일 반	발연기, 화생방장비, 지뢰제거장비
통신전자	무선통신기, 전파기기, 다중통신장비, 항법장비, 레이더장비, 음향
	탐지장비, 전자전장비 등
함 정	함정, 소해장비, 수뢰장비, 항해광학장비, 수중공격 및 항만방어장
	비등
항 공	항공기, 직접 지원장비, 무장장착장비 등
기타	기타 전투장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방부장관이 감사원장과 협의
	하여 정한 전투용장비 및 기재

2. 전투지원장비

분 류	세 목
기 동	트럭(지휘정찰, 작전연락, 장비가설, 병력 및 물자수송용), 견인차,
	구난차, 통신가설차, 중장비 운반차 및 기타 군용트럭과 트레일러
	등
일 반	도하장비류
통신전자	전화기(야전용), 전신기, 교환장치, 전화중계장치, 반송장치, 중계
	대, 시험대, 원격조정장치 및 반송전화단말장치
화력, 특수무	
기, 통신전자,	
기동, 일반,	전투장비의 검사시험 및 정비용장비
함정, 항공,	
정밀측정	
기 타	기타 전투지원장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방부장관이 감사원장과
	협의하여 정한 전투지원용 장비 및 기재